

서 문

집합적으로 “양 당사국”이라 지칭되는 대한민국(이하 “대한민국”이라 한다)과 페루공화국(이하 “페루”라 한다)은

양국간 특별한 우호 및 협력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,

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증진하기로 결의하며,

무역,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,

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, 노동 조건 및 생활 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의하며,

양국간 무역에 대한 왜곡을 회피하기로 결의하고,

국제 무역 및 투자에 있어, 투명성을 증진하고, 뇌물을 포함한 부패·인권침해와 관련된 부정을 예방 및 퇴치하기로 결의하며,

환경 보호 및 보전과 기본적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고,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로 결의하고,

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반영된 대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제고하는 것에 대한 양국의 동의를 재확인하기로 결의하며,

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“보고르 목표”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결의하고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